

# 2024 「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사업 2차 공모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미술 전문지와 비평가 연계 지원을 통한 비평문화 확산 및 비평가 양성을 위해 2024년 「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구분	내 용						
공모명	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 사업 참여단체 2차 공모						
신청기간	2024. 4. 9.(화) ~ 4. 26.(금) 15:00까지						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술 비평가와 협업이 가능한 시각예술 전문매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오프라인 매체 : 최근 3년간 과월호 10권 이상 발행 매체</li> <li>- 온라인 매체 : 설립 후 1년 이상, 시각예술 관련 콘텐츠 20편 이상 지속적, 정기적 게재·발행 매체(1인 미디어 및 개인 블로그 등 운영자 본인이 필자로 활동하는 곳은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</li> </ul>						
신청자격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일 기준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</li> <li>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,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공공기관 및 단체</li> <li>기획재정부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문화체육관광부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제7조제4항(보조사업자선정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</li> <li>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</li> <li>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li>성희롱·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</li> </ul>					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각예술 비평문 원고료 및 매체 게재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평 원고 1건당 최대 160만원(원고료 최대 125만원, 게재비 35만원)×최대 30건 내외</li> <li>※ 비평 원고료는 200자 원고지 1매당 20천원~25천원 내외로 산출(최대 50매)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체 1개 내외, 매체당 최대 50백만원 지원</li> </ul>						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평문은 한국 국적의 작가 및 한국작가의 전시, 주제에 한함</li> <li>전체 건수의 50% 이상 신진작가 비평문 책정 필수</li> <li>전체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비평가 1인당 비평문 3건 이상 배정 불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비평가 1인이 특정 매체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3건의 비평 원고를 배정한 경우, 타 매체에서는 지원사업 참여 불가</li> </ul> </li> <li>동일한 비평 원고로 타 기관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</li> </ul>						
지원 세부항목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지원내용 예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문가 활용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고 및 편집 사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각예술 비평문 원고료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홍보 마케팅비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고매체 수수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평문 매체 게재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원내용 예시	전문가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고 및 편집 사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각예술 비평문 원고료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홍보 마케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고매체 수수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평문 매체 게재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
	구분	지원내용 예시					
	전문가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원고 및 편집 사례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각예술 비평문 원고료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				
홍보 마케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광고매체 수수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평문 매체 게재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※ 원고료 및 게재비 외 항목 지원 불가							
지원기간	2024. 6. 1. ~ 12. 13.						

## □ 지원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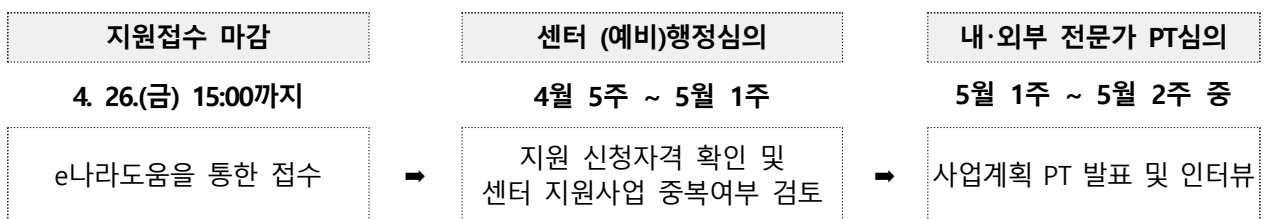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- 신청기간 : 4. 9.(화) ~ 4. 26.(금) 15:00까지
  - ※ 접수기간 내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신청기간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  - ※ 제출서류 누락 시 심의에서 제외되며 모든 책임은 지원자(단체)에 있음
- 제출서류 및 방법 : 전자파일 형태로 'e나라도움'을 통해 제출
  - ※ 아래 표 참고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함

단계	구분	제출서류
서류 심의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	•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작성
	e나라도움 파일 첨부	•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식의 지원신청서 1부 *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(www.gokams.or.kr) →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(JPG 또는 PDF 파일) 1부 • 최근 3년간 매체 발행 이력(jpg 또는 pdf 파일) 1부 - 오프라인 매체 : 최근 3년간 발행 간행물 발행 이력 - 온라인 매체 : 최근 3년간 발행 콘텐츠 발행 이력
PT 심의	PT 자료	• 서류심의 이후 PT심의 대상 단체에 한하여 이메일을 통한 제출

- ※ 'e나라도움' 내 공모신청 경로  
사업수행관리>신청관리>공모현황>공모명 : 「2024 한국미술 비평지원」 참여단체 2차 공모' 검색>신청서 작성
- 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- ※ e나라도움 가입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- ※ 본 지원 사업은 '예치형'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- ※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-9595

## □ 심의개요

- 심의방법 : 내부 및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류 및 PT심의
- 심의절차



\*상기 심의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

-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공고

## □ 주요사항

<b>지원 불가 항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고료 및 게재비 외 항목 지원 불가</li> </ul>
<b>선정 단체 의무 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지원사업을 통해 게재된 지면 또는 웹페이지에 지원 문구 기재</b>  <b>※ 예시) "이 기사(원고)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특별 기고로 게재되었습니다."</b></li> <li>• <b>e나라도움 교육 보조사업자 집행과정 교육 이수 후 수수료증 제출</b></li> <li>•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.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6조의2 제1항의 '불공정행위'에 해당되며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</li> </ul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* '문화예술용역'이란?        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</b></li> <li>- <b>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</b>(사업운영인력 전원)</li> </ul> </li> <li>• <b>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</b></li> </ul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       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</li> </ul>

## □ 유의사항

-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
  - 선정 제외 대상에는 지원단체 뿐 아니라 참여 비평가 및 작가도 포함함
- 선정 단체 대표 및 임직원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평가 및 작가가 친인척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
-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비평사례비 지급 불가
-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며,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  -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
- 지원신청 예산의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명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비평문의 저작권 관련 논란(표절 등)이 발생할 경우, 해당 건에 지출된 원고료 및 게재료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음

○ 국고보조금 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사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(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)의 경우
- 아.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

○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
\*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
\* 예 :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(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
○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

\* 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

\*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 내에서만 가능

\* 교부 신청은 사업 시작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

○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

\*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

\*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

④ **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**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

○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

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- 공모요강,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, 사업운영 가이드, 의무 및 유의사항 등 규정을 미숙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해당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제출 후 수정 불가)

## □ 관련문의

- 사업 관련 문의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정보팀
  - (유선) 02-708-2219
  - (이메일) [hyme9@gokams.or.kr](mailto:hyme9@gokams.or.kr)
    - ※ 문의 가능 시간 : 평일 월-금, 10:00~17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e나라도움 이용문의 : e나라도움 고객센터
  - (유선) 1670-9595